- (3) 잠수작업 시 송기설비의 고장, 호스절단 등으로 산소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(가) 잠수 전 잠수기구 점검사항
    -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한 공기 송기 잠수작업의 잠수기·송기관 및 신호밧줄
    - 산소통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·송기관·신호밧줄 및 압력조정 기
    - 잠수작업자가 산소통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압력조정기
  - (나) 잠수작업시설
    - 엔진, 콤푸레샤, 예비공기조, 공기청정기, 유량계, 공기호스
  - (다) 잠수부 정기 건강진단 : 1회/6개월 이상
  - (라) 잠수시 감시원 배치계획
  - (마) 10미터이상 잠수시 개인장구 지급계획
    - 시계, 칼, 나침반, 수심측정기 등
  - (바) 잠수용 산소병의 실병과 공병의 구분 조치
  - (사) 야간 작업시 잠수작업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아) 수중작업 연락체계(수중전화 등) 계획
  - (자) 송기량, 작업시간, 휴식시간 및 잠수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계획
    - 음주 후 4시간 이내, 식사 후 2시간 이내, 공복 시 금지
  - (차) 잠수작업용 보호구 및 비상시 피난을 위한 용구 지급계획
- (4) 안전작업계획서는 현수교, 사장교 주탑 기초 작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,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하며, 공사 중에는 계획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- (5) 현수교, 사장교 기초 시공시에는 돌풍이나 바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기예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6) 현수교, 사장교 기초 시공은 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 작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